

<p>사회교육시설 등의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, 앞으로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감면하여 준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으며,</p> <p>셋째, 현재 시세감면율 26.6%로 시행하여온 짚차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율 91년 1월 1일부터는 폐지하되, 97년은 시세감면율 13.3%로 축소 감면 조정하였으며,</p> <p>넷째,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기존주택의 승계취득은 시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,</p> <p>다섯째, 재래시장을 재개발,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자와 5년 이상 재래시장 임대입점 사업자의 재래시장 재건축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,</p> <p>여섯째, 부동산 매매의 경우 견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취득세, 등록세의 시세감면율을 20/100에서 10/100으로 축소하였으며,</p> <p>일곱째,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 각 조문에 단서로 규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경감 받은 후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 신고납부 또는 추징하도록 조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.</p> <p>이번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 개정으로 지방세 세금면제혜택은 장애인은 약 3억 원, 서울특별市 시장 458개 중 202개소의 재래시장은 약 39억 원이 경감이 되고, 견인계약서 사용으로 약 350억 원이 증세가 되겠습니다.</p> <p>서울特別市에 등록된 6만 4,480대의 짚차형 자동차세는 약 62억 원이 징수되어 총 370억 원의 세금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</p> <p>취득세와 등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중요한 세목으로서 취득세는 97년에 서울特別市 일반회계 예산액 5조 8,900억 원 중의 13%인 7,871억 7,400만 원 규모가 되고, 등록세는 97년 예산 일반회계의 21%인 1조 2,158억 원 수준으로 취득세는 96년보다는 7.5%, 등록세는 약 30%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.</p> <p>존경하는 議員 여러분,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</p>	<p>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이 원안가결되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그러면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,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 여러분, 이의 없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호중 “2,538명”을 “2,554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3호중 “5,348명”을 “5,733명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제2조제1호 및 동조제3호 증원 정원증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부칙 제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부칙 제2항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정원 339명에 대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5조중 “승용자동차”를 “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”로 하고 “자동차세를”을 “취득세·등록세 및 자동차세를”로 한다.</p> <p>제7조중 “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.”를 “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</p>
--	---